

## 한화단기하이일드증권 모투자신탁(채권) 신탁계약서

### 제 1 장 총칙

**제 1 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투자신탁을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3.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라 함은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들을 말한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일반사무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한다.
5. “투자신탁”이라 함은 한화단기하이일드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을 말한다.
6. “자투자신탁”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7. “투자설명서”라 함은 자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8. “증권시장”이라 함은 법 제 8 조의 2 제 4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을 말한다.
9. “법”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10.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를 말한다.
11. “신탁업자”라 함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말한다.
12. “전자등록기관”이라 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 2 조 제 6 호에 의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한화단기하이일드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이라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다.
2.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2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이다.
3. 이 집합투자기구는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이다.

4.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다.
5.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이다.

**제 3 조의 2(자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으며, 자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립될 수 있다. 이 경우 제 43 조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한화단기하이일드증권 자투자신탁(채권)
2. 한화월지급단기하이일드증권 자투자신탁(채권)
3. 한화연금단기하이일드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2009년 2월 4일에 체결한 ‘투자신탁의 보관·관리에 관한 기본약정서’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 4 조의 2(외화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등의 위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42 조와 법 시행령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자산 및 이와 비슷한 자산인 외화자산(제 16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에 한함)에 대한 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지분증권 등의 의결권행사를 포함. 이하 본 조에서 같다), 조사분석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투자업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지급하는 보수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한다.

**제 4 조의 3(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① 이 신탁계약 시행일 현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J.P. 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이다. 집합투자업자는 제 43 조에 정한 신탁계약 변경절차에 따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의 4(외화자산의 보관)**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 16 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자산을 제외함)
2. 제 1 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② 신탁업자는 본조 제 1 항에 따라 선정한 해외보관대리인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신탁업자를 대행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5 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신탁원본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24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7 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 및 이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6 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1,000 좌당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의 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1,000 좌당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

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발행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 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 라 한다)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고객(자투자신탁)의 상호 및 주소(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증권의 수
- ③ (삭 제)
- ④ (삭 제)

**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 제)**

**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 (삭 제)**

**제 13 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자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수

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상호)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 제)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 3 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 354 조 제 4 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기준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제 2 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 14 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 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 15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단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채무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미국 단기 하이일드 채권 시장에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 조(투자대상자산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등급이하이거나 투자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채권,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 무보장사채 및 대출채권을 포함),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법 제 3 조 제 1 항에 의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국내채권**”)
2.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국내채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해외채권**”)
3. 법 제 4 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
4. 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이하 “**파생상품**”)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법 제 5 조 제 2 항에 의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하 “**장내파생상품**”) 및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이하 “**장외파생상품**”)
5. 국내외 금리스왑거래
6.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채권형수익증권 및 채권형투자회사가 발행

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

7. 증권 대여
8.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9.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12. 법 제 83 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국내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2. 해외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3.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는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5. 국내외 금리스왑거래에의 투자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의 총액이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어음(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채권형수익증권 및 채권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자산총액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0%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7. 증권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8. 환매조건부채권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9.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10.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는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1. 단기대출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12. 제 16 조 제 1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제 18 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

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3 항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을 포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예조에서 같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자산총액의 100% 이하: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 이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에 한함),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됨)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월간 적용

3.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이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4.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제 19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제 17 조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및 제 11 호, 제 18 조 제 2 호 및 제 4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 81 조 제 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7 조 제 1 호부터 제 9 호까지 및 제 11 호, 제 18 조

제 2 호, 제 4 호부터 제 6 호까지에 따른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일로부터 3 개월 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 3 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20 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21 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1 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3 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 269 조 제 2 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법 시행령 제 269 조 제 3 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법 제 247 조 제 5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 2 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 4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4 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23 조(수익증권의 판매)**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제 24 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영업일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매수청구 접수시간 경과 후에 자투자신탁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동 청구에 기하여 당일에 자투자신탁이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자투자신탁에 대한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25 조(환매업무)**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자투자신탁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다.

④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6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에는, 동 환매청구에 기하여 당일에 자투자신탁이 이 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환매청구일(당일 포함)로부터 7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⑦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해당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해당 자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⑧ (삭 제)

**제 26 조(환매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한 날(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경우 제 2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였고, 동 환매청구에 기하여 당일에 자투자신탁이 이 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당일 포함)로부터 5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27 조(환매연기)** ①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 및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통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2 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3 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 전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 258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 1 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 5 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5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4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5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 28 조(환매연기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① 제 27 조에 따른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날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27 조에 따른 환매연기기간 동안에는 제 30 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5 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제 29 조(집합투자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 제 1 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1,000 좌당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

**제 31 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1 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32 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 33 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이를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분배한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고,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익금의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 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34 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 10 조 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 35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 및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6 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 33 조부터 제 35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제 6 장 수익자총회

**제 37 조(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상법 제 36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직접 또는 대리 불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 제 6 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 221 조 제 7 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 5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5 항 및 제 6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88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 222 조 제 1 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삭 제)

## 제 7 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39 조(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 40 조(판매수수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나 후취판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제 41 조(환매수수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제 42 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 1 항에서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수익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비용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③ 제 2 항 제 9 호에서 규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거래수수료(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 pocket expenses)

## 제 8 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37 조 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 44 조 제 4 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 1 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중대한 법규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기타 집합투자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신탁업자가 중대한 법규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기타 신탁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 184 조제 4 항,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 245 조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⑤ 본 조에 따른 사유 또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의 의결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일에 해당일의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6 개월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변경전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③ 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 49 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 투자신탁이 제 1 항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46 조(투자신탁 해지시 미지급금 등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45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 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45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제 9 장 보칙

**제 47 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9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 2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 93 조 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93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 1 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자투자신탁의 수익자 포함)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⑤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⑥ 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되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또는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수익자에게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90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⑧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법 제 239 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제 50 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51 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2 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 제 1 항 제 15 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본 신탁계약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부 칙(2013. .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변경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변경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변경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신탁계약 시행 이후 최초로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의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의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2020.05.08)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의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2026.04.10)  
**제2조(환매대금지급일의 적용)** 제26조 및 제28조의 변경내용은 2026년 4월 10일에 환매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 화 자 산 운 용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용 현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봉래동1가)  
                                 흥 콩 상 하 이 은 행 서 울 지 점  
                                 증 권 관 리 부 서 장